

2020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가. 회 의 일 : 2020년 11월 20일(금)

나. 회의장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육원

다. 부의안건

■ 보고안건

- 전차 회의록 보고

■ 의결안건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감사 선임(안)
- 규정 개정(안)

라. 출석자 :

이사장	신필균	이 사	권병진
이 사	김 진	이 사	문종찬
이 사	윤정숙	이 사	이은애
이 사	이재진	이 사	이창곤
감 사	문승석		

마. 배석자 :

부 장	이혜원	대 리	김태연
-----	-----	-----	-----

바. 회의시간

- 개 회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00분
- 폐 회 : 2020년 11월 20일(금) 12시 30분

Ⅱ. 보고 사항

가. 전차 회의록 보고

: 전차 회의록 승인

- 이해원 부장이 보고를 하다.
-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신필균 의장(이하 의장)이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Ⅲ. 심의·의결 사항

가. 제1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조건부 가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하여 진행하기로 승인하다.

-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이해원 부장이 제안 이유를 보고하다

[제안이유]

- 1) “정관 제2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자 함
- 2) 회계연도 내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함

- 조건부 가결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보완하여 진행하기로 선언하다.

■ 논의 내용

- 의장이 자유롭게 논의해 주기를 주문하다.
- 김진 이사가 우분투크레디트 사업의 컨설팅 비용에 대한 구체적 예산 근거가 있는지 묻고 이은애 이사가 자문이 아닌 동시추진(파트너십) 및 노무상담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일체의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이창곤 이사가 효과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장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세부 계획을 다시 마련하기로 하다.
이재진 이사가 지적사항이 옳으나 예산 변경 없이 통과시키고, 구체적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김진 이사가 제청하다.
- 문승석 감사가 회계보고와 회계규정에 관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기금에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양식을 마련하고, 투자 및 이자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문감사의 사정으로 감사보고를 사업 논의 중간에 하다)
- 이재진 이사가 비정규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하고 문종찬 이사가 우분투재단이 우분투비정규센터에 지원한 2020년 지원금 중 불용액 약 1600 만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다. 이창곤 이사가 차기년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2021년 비정규지원 사업 예산 1억8 천만 원과 2020년 센터 지원 불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만장일치로 제청하다.
- 부장이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과 우분투 장학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다.
문종찬 이사가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의 세부금액에 오차가 있음을 말하고 부장이 수정하기로 하다.
- 이창곤 이사가 우분투 연구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물을 노조와 함께 공유하며 노조와 재단이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하다.
- 의장이 노사기금 재단과의 공동사업과 그해 핫 이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다. 우선 예산편성을 승인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 윤정숙 이사가 우분투상에 대하여 묻고 언론인상 포함을 제안하다.
권병진 이사가 상을 줌으로써 재단의 홍보효과 등이 있으므로 매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다. 매년 우분투상을 진행하되 시상 종목을 줄여 단체/개인, 언론, 노조 지부(3)로 의견을 모으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신필균 의장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부내용 수정·보완을 전제로 원안 가결에 동의를 구하다.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나. 14호의안 : 감사선임(안)

: 원안 가결

-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이유를 보고하다.

[제안이유]

- 1)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따라 신용석(사업), 문승석(회계) 감사의 임기(2018년 11월 28일~ 2020년 11월 27일)가 2년 만료됨으로 감사를 선출하고자 함.
- 2) 정관 제6조(임원의 선임) ③ 감사는 당연직 이사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문승석 감사(회계)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하승수 감사(사업)의 취임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의장이 원안가결을 선포하다.

■ 논의 내용

- 의장이 문승석 감사의 연임에 동의를 구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 신용석 감사의 사임으로 이재진 당연직 이사의 추천을 받아 하승수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다. 15호 의안 : 규정 개정(안)

: 조건부 원안 가결

-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이유를 보고하다.

[제안이유]

- 1) 재단 설립 2년 차를 맞이하여 재단 운영의 명문화가 필요하고, 규정을 신설하거나, 사문화한 비실용적 조문들을 폐지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규정집의 완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사무직원들의 복리후생 조건을 현실화 할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의장이 수정·보완을 전제로 원안가결을 선포하다.

■ 논의 내용

- 의장이 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하다.

- 권병진 이사가 (별표1) 위임전결 기준의 전결권자 및 예산전용의 세부업
무 내용에 우려되는 내용이 있음을 발언하다.

이은애 이사가 예산전용의 세부업무를 목간전용-이사장 전결, 세목전용-
사무처장 전결로 수정하길 제안하다.

- 의장이 수정·보완을 전제로 규정개정의 승인에 동의를 구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20년 11월 20일

이사 신필균



이사 권병진



이사 김진





이사 문종찬



이사 윤정숙



이사 이은애 

이사 이재진 

이사 이창곤 